제529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록

2021. 2. 26.

국 무 조 정 실
규 제 조 정 실

Ⅰ. 회의개요

○ 일　　시 : ‘21. 2. 26. (금) 10:30 ~ 12:00

○ 출석위원(9명)

- 경제분과위원회 위원장(주재)

- 민간위원 : 김윤정・김준기・문소영・이지혜・이철수・정은미・최병환 위원

- 정부위원 : 기재부, 국조실, 공정위

Ⅱ. 상정안건

의안번호	상정기관	의 안 명	구 분
2021-75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안건

Ⅱ. 심의 결과

1.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부, 2021-75)

□ 개 요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 사무명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 (협회장 및 이사장의 당연직 삭제)
위원회 결정 내용	원안동의

□ 논의 내용

(1)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협회) 조합원의 대부분이 협회 회원사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공제조합에서 보증 등을 제공받는 조합원은 을의 위치에 있어 개별적으로 조합에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우므로, 협회에서 선출된 협회장을 통한 의견전달이 필요함.

또한, 대리인인 조합 경영진은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여 경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방만 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조합원을 대표하는 협회장의 당연직 유지 필요.

당연직 규정은 조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부터 존재하던 것으로 협회장을 당연직에서 제외할 경우 정부측 당연직 위원도 삭제해야 함.

○ (○○○위원) 협회장은 당연직에서 제외되더라도 조합원 투표를 통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협회) 맞다. 다만 운영위원에는 정부 위촉 전문가 위원도 있으므로, 협회장을 당연직에서 제외할 경우 균형을 위해 국토부 등의 당연직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위원) 협회는 이사장의 당연직 제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협회) 합당하다고 봄. 이사회를 감독하는 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사장 역시 당연직에서 배제되는 것이 옳다.

○ (○○○위원) 당연직 제외 이외에 조합의 운영 등에 관해 의견이 있는지?

⇒ (○○협회) 공제조합은 그간 방만한 경영이 지속되어 왔으나, 개선 노력이 없었음. 이번에 국토부의 공제조합 개편방안에 조합 경영 혁신이 포함되었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위원) 조합의 방만경영은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구조의 실패로 보임.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운영위원도 책임이 있다고 봄. 이번 개정안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의사결정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협회도 동의하는지?

⇒ (○○협회) 일부분 동의함. 실제로 일반 회사 등과 비교해봤을 때, 공제조합의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관계는 기형적임. 궁극적으로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봄.

○ (○○공제조합) 공제조합의 경영책임은 이사회에 있는 반면, 주요 사항을 의결한 운영위원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이해충돌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협회장은 1사 1표에 의해 선출되지만, 조합은 1좌 1표의 의결방식을 갖고 있으므로, 협회장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협회 회원사들은 공제조합의 보증채무자로서, 협회와 조합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이해상충 문제가 우려됨. 특히 운영위원회를 협회 측이 장악하면서,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의결 사례가 여러 차례 나타났으므로 협회장의 당연직 삭제는 합당함.

한편, 조합 이사장을 당연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으나, 개정안 통과를 통해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체계가 개선된다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임.

○ (○○○위원) 임금 협상 등은 운영위원회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인가?

⇒ (○○공제조합) 구체적인 내용은 임직원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나, 예산안에 반영되므로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게 됨.

○ (○○○위원) 협회장은 협회 회원사인 소액출자자의 민원 등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나?

⇒ (○○공제조합) 건설사는 공사를 위해 보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공제조합에 의무 출자하여야 함. 이를 통해 출자금의 8~30배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음. 영세 건설사는 소액출자자로서 보증채무자 성격이 강하므로, 협회장을 통해 과도한 보증을 요구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운영위원은 1좌 1표에 따라 선출되어야 함.

○ (○○○위원) 현재에도 운영위원 중 절반 이상이 정부 위촉 전문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협회장 등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할 수 없는 이유는?

⇒ (○○공제조합) 전문가 위원을 제외한 조합원 위원은 협회장 및 협회 시·도회장으로 구성되어 의견이 일치된 상태로 의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므로, 현실적으로 전문가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움.

○ (○○○위원) 운영위원회 개편과 함께 추진되는 조합 경영 혁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공제조합) 그간 조합 경영이 다소 방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개편안에 경영 사항별로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 있음.

○ (○○○위원) 단순히 협회장을 당연직에서 제외한다고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 (○○공제조합) 이번 개정안에는 운영위원회가 여러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출자규모 별로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등의 개선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협회장 당연직 제외와 연계되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위원) 이사장의 당연직 삭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인지?

⇒ (○○공제조합)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훼손할 여지가 있으나, 국토부 후속조치를 통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안을 수용함.

(2) 부처 의견 청취

○ (국토부) 국토부는 공제조합의 방만경영과 협회의 과도한 개입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 경영혁신 방안과 운영위원회 개편을 동시에 추진 중임.

협회장 당연직 제외와 관련하여, 협회는 회원사의 대다수가 연 매출액 90억 미만의 소기업인 반면, 조합은 상위 20%가 약 65%를 출자하므로, 협회와 조합의 이해상충이 우려됨. 또한, 조합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건설사들의 보증·융자 부실율이 일반 조합원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따라서 협회와 조합을 분리하고, 조합에 대한 협회장의 과도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당연직에서 제외해야 함.

이사장 당연직 제외와 관련하여, 이사장은 법령상 운영위원회의 피감독대상이므로 당연직 제외가 바람직하며, 향후 이사장의 책임경영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위원) 이사장도 선출직 운영위원이 될 수 있나?

⇒ (국토부) 이사장은 조합원이 아니므로 선출직 운영위원은 불가함. 다만, 이사장의 운영위원회 출석 및 의견개진 권한 등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할 예정.

○ (○○○위원) 국토부의 감독 권한이 재무건전성에 한정된 점도 운영위원회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어려운 이유인 것 같은데, 어떠한가?

⇒ (국토부) 맞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당연직 제외와 함께 운영위원 임기제한, 안건 사전협의 절차 등을 도입할 예정임.

○ (○○○위원) 협회 회원사 이외의 조합원에 대한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 (국토부) 조합의 영업이익은 배당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환원해야 하나, 그간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협회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등 비회원 조합원의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음.

한편, 현재 대의원 구성방식이 근본적으로 협회 회원사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비회원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기 어려움. 이는 향후 개선할 예정임.

(3) 위원회 논의

○ (○○○위원) 이해관계자와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협회장 및 이사장 당연직 삭제는 타당해 보임.

○ (○○○위원) 조합의 방만 경영과 조합에 대한 협회의 과도한 개입을 해결하는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에 따른 규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심의 결과: 원안동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제조합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과 이사장을 제외하는 것은 그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동의로 의결함.